

구리시 공고 제2024-812호

2024년 구리시 주택태양광(도 자체)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공고 제2024-1099호」,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도 직접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구 리 시 장

1. 사업내용 : 경기도의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과 연계하여 3kW 태양광을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예정)자에게 시 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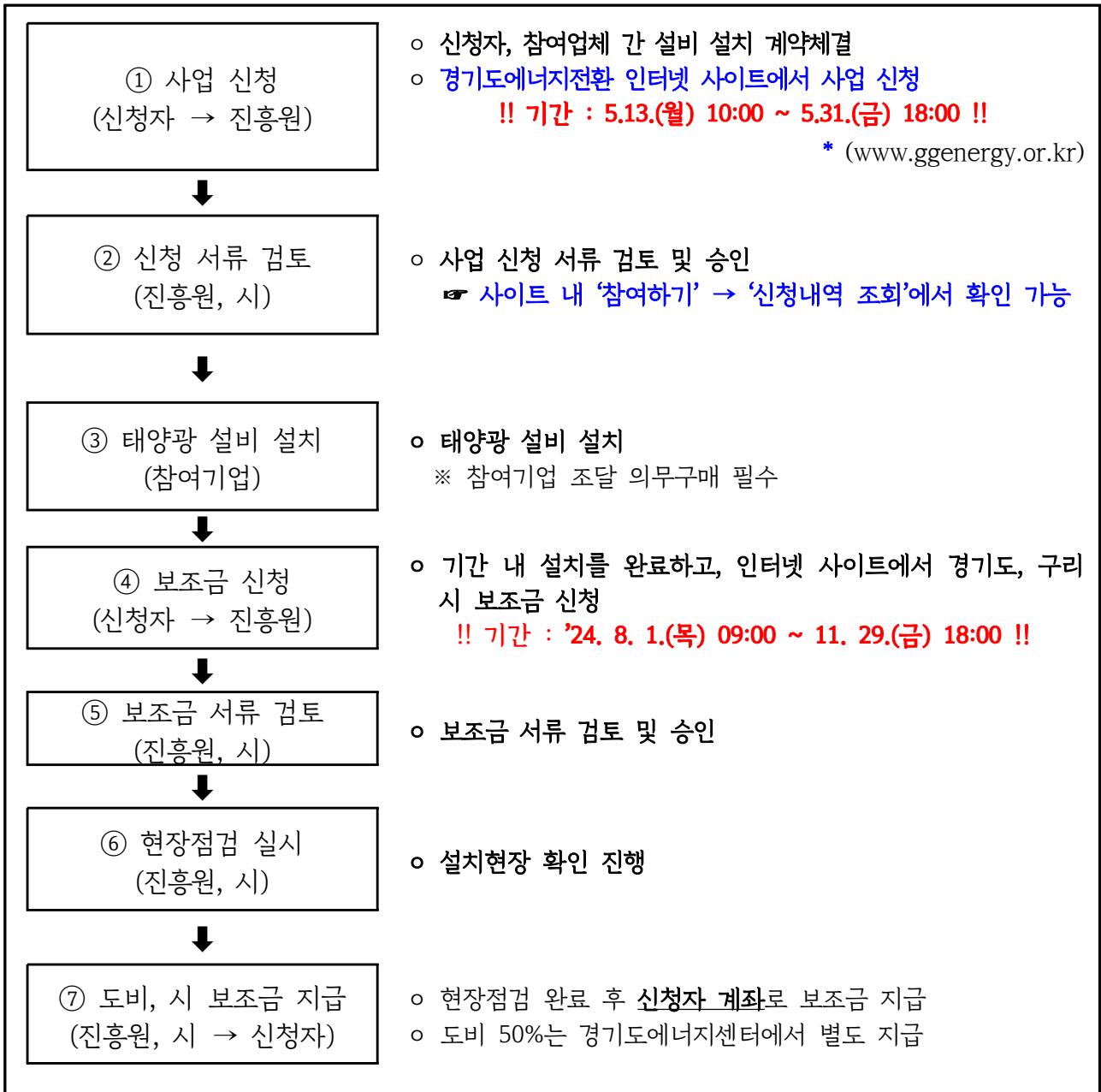
2. 지원규모

구 분	사업비	가구수	지원금액	지원단가
‘24년 계획	13,500천원	15세대	900천원/가구	1KW당 300천원

3. 지원대상: 구리시에 소재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
한 단독주택 소유(예정)자로, 경기도의 2024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1차 신청기간 내 선정된 자

-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완료기간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3.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5.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4. 지원절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참여 신청

-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 신청기간 : '24. 5. 13.(월) 10:00 ~ 5. 31.(금) 18:00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접속(www.ggenergy.or.kr) → 상단 메뉴 '참여하기' → 지원사업 신청 → 2024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클릭 → 신청자 및 참여 기업 정보 입력 → 신청서류 제출*

* 총 6장의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할 것

번호	사업명	기간	상태
70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	2024-03-04(월) ~ 2024-03-08(금)	마감
69	"2024년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사...	2024-02-23(금) ~ 2024-03-03(월)	마감
68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	2024-02-05(월) ~ 2024-02-09(금)	마감
67	24년 스마트에너지파워 플랫폼 조성사업 참여자 모...	2024-01-15(화) ~ 2024-01-26(금)	마감
66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	2024-01-02(화) ~ 2024-01-05(금)	마감
65	태양광 컨설팅(진단) 전문위원 모집	2024-01-02(화) ~ 2024-01-31(수)	마감
64	[마감]2023년 2차 일소통 지원사업 시열개선 ...	2023-12-11(화) ~ 2023-12-22(금)	마감
63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태양광 ...	2023-11-09(목) ~ 2024-01-31(수)	마감
62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제6...	2023-11-03(금) ~ 2023-11-15(수)	마감
61	[마감]2023년 2차 일소통 지원사업 (경기남부)...	2023-10-26(목) ~ 2023-10-30(월)	마감

○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1)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2) (구축의 경우)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3)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1부 4) 한전 종합정보내역서 1부(신축은 해당없음)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 안내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무효)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nergy.or.kr)
- 신청기간 : '24. 8. 1.(목) 10:00 ~ 11. 29.(금) 18:00
- 지급방법 : 계좌이체(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시·군 → 소유주)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nergy.or.kr) → 상단메뉴 '참여하기' → 지원사업 신청 → 2024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보조금 공고 → 신청자 및 참여기업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서 첨부(총 10장의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① 사업 보조금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첨부서류	1) 신청자 명의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2) 사용전검사 필증 1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1부 4) 하자이행증권 1부 5)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1부 6) KS 제품인증서(모듈, 인버터) 1부 7) 토지대장(토지에 설치할 경우만 제출) 1부
------	--

② 설치완료 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③ 시·군 보조금 신청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무효)

다. 지급기준

- 1)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1차에 신청하여 선정된 참여자
- 2) 태양광 설비 설치 및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 3) 경기도 설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4)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정부24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
- 5) 시·군 보조금 신청서는 현 공고문 9p에서 확인 가능

6. 가구별 지원금 및 자부담금 (구리시)

(단위 : 천원)

구 분	태양광 설치용량	제 품 가 격	지원금액		자부담 금 액
			도비	시비	
단독 주택	3KW	5,338	2,669 (50%)	900 (16%)	1,769 (34%)

※ 도비 지원금은 경기도에너지센터에서 지급함

7. 유의사항

- 구리시에서는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일조권, 조망권, 계약금 등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와 주변 거주자, 참여기업 사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분쟁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고 개입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사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함
 - 신청자는 우리시 보조금 없이 경기도의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시의 지원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공고 내용 미숙지, 제출 서류 오기 책임은 해당 기업과 신청인에 있음
 - 참여기업은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본사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업체로 한정함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시공업체와 신청자의 계약은 표준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참고하여 서로 합의하여 계약하여야 함
 - 시공업체와 신청자는 계약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KS인증제품으로 설치해야함
- ※ 보조금 신청시 KS인증제품 확인 서류 제출 필수

- 설치 완료된 발전설비는 명판(별첨 제5호 서식)을 부착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요구 시 소비자 관리현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현장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보강 및 보완을 해야하며, 미준수시 결격사유로 간주하여 보조금 미지급 될 수 있음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사업 승인자는 본사업에서 제외됨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법인이면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증, 소유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대리 제출 불가)
-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고내용 및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공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경기도 공고)」을 적용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규모, 지원내용, 접수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85-0566, 031-996-7619)
 - 구리시 환경과 기후대응팀(☎031-550-2325)

붙임 : 구리시 보조금 신청서류 (서식) 1부. 끝.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단독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 ‘주택’ 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단독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공동지분인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 경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음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에게 계약의뢰 요청하여야 함
 -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승인받은 업체 중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기업(본사 기준)
-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설치가능성, 자부담금,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충분히 검토·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및 설비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등에 대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시·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구비서류는 공고일(2024. 5. 3.)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 공고일 이전 서류 제출 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서류 제출 목록표

사업 신청서류		
[별지 제 1호 서식]	사업 참여 신청서(도, 시·군)	
별지 제 1호 첨부서류	1. 표준계약서	
	2-1. (구축) 건축물대장	
	2-2. (신축)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3. 한전 종합정보내역서(신축인 경우 해당없음)	
[별지 제 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별지 제 3호 서식]	사업 안내 확인서	

보조금 신청서류		
[별지 제 4호 서식]	도비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4호 붙임서류	1. 신청자 명의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2. 사용전검사 필증	
	3.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4. 하자이행증권	
	5.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6. 토지대장(토지에 설치할 경우)	
	7. KS 제품인증서(모듈, 인버터)	
[별지 제 5호 서식]	설치완료 확인서	
시·군 신청서류*	1. 시·군비 보조금 신청서	붙임 3
	2.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가능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 공지사항 →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공고 참조

